

#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실천사항



## 1. 목적

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「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)를 구성, 신규 협력업체 등록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2. 심의 대상

- 2.1 가격결정 심의 : 20억/년 이상 거래 협력사의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의 심의
- 2.2 협력회사 선정, 등록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
- 2.3 협력회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심의
- 2.4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 발생 시 분쟁조정
- 2.5 하도급 준수 사항 점거(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준수여부)
- 2.6 불공정 거래 관리 감독

## 3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3.1 위원회는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현업 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
- 3.2 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 할수 있다.
- 3.3 위원회는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및 내부 업무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한다.
- 3.4 심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"안건 없음"으로 회의록을 작성 후 보관한다.

## 4. 심의내용

- 4.1 가격 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
  - 2.2.1 항의 하도급 협력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기본약정서 체결,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
- 4.2 협력업체 등록 심의 및 거래중단에 관한 사항
- 4.3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및 협력사 불만 접수 시 이행 조치 심의
- 4.4 기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
- 4.5 하도급 업무 진행 관련 ISSUE 사항 심의

## 5. 사후관리

- 5.1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장 결재를 득하고 각 위원의 합의를 득한다.
- 5.2 위원회 관련 증빙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